

#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2017년 6월 21일(수)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룸 C

##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 일시 : 2017년 06월 21일 (수) 9:30-13:00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룸 C
- 주최 : 주한스웨덴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관 :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 시 간          |     | 프로그램   |
|--------------|-----|--|
| 09:30~09:40  | 10' | 개회사<br>- 안 회그룬드, 주한스웨덴대사<br>-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 09:40:-10:10 | 30' | 스웨덴 반부패 대응과 시사점<br>- 린다 바크테만, 주한스웨덴참사관   |
| 10:10-10:50  | 40' | 유럽연합(EU) 반부패 정책 및 유럽 주요국 반부패법, 기업 사례<br>-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책임연구원                        |
| 10:50-11:50  | 60' |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기업 사례 발표)<br>- 권순엽, 에릭슨 동북아시아 준법지원 총괄/상무<br>- 프레드릭 루에쉬, 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 부문 사장 |
| 11:50-12:00  | 10' |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br>-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
| 12:00-13:00  | 60' | 오찬   |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 스웨덴 반부패법 대응과 시사점

린다 바크테만  
주한스웨덴참사관

## MEMO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 유럽연합(EU) 반부패 정책 및 유럽 주요국 반부패법, 기업 사례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유럽연합(EU) 반부패 정책 및 유럽 주요국 반부패 법/제도와 사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 | 책임연구원

2017. 6. 21 (수)

### TABLE OF CONTENTS

- 01 | 글로벌 반부패 흐름
- 02 | 유럽연합(EU) 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EU 반부패 패키지)
  - 1) 유럽평의회 반부패 국가연대(GRECO)
  - 2) 민간부문의 부패 척결
  - 3) EU 반부패 보고 메커니즘
- 03 | 유럽 주요국 반부패 법과 제도 및 사례
  - 1) 영국
  - 2) 독일
  - 3) 프랑스
  - 4) 스웨덴
  - 5) 네덜란드

## 글로벌 반부패 법 및 협약



## 뇌물방지 및 반부패 트렌드 2017



\* 출처: Anti-bribery and corruption: global enforcement and legislative developments 2017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  |   |
|--|---|
| <p><b>1</b> 반부패법 집행을 위한 공조 강화</p> <p>International coordination on anti-bribery enforcement grows stronger</p> | <p><b>2</b> 협력, 개선 및 합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p> <p>New mechanisms to encourage cooperation, remediation, and settlement</p> |
| <p><b>3</b>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통합</p> <p>Converging compliance standards</p>   | <p><b>4</b> 새로운 법과 형사 책임의 가능성 증가</p> <p>New laws and more potential for criminal liability</p>                          |

## 유럽연합의 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EU CSR & Anti-Corruption Trends

### 유럽의 CSR 트렌드 - 유럽 2020 전략



#### EUROPE 2020 STRATEGY



#### ✓ EU 집행위원회 CSR 전략

1. CSR의 뚜렷한 증진과 우수 사례 전파
2. 기업의 신뢰도 증대
3. 기업의 자가 규제 및 공동 규제 확산
4. CSR에 대한 시장 보상 증진
5. 기업의 사회·환경 정보 보고 증대
6. 교육, 훈련 및 연구에의 CSR 통합
7. 국가, 지역 CSR 정책 강조
8. CSR에 대한 유럽 및 글로벌 접근을 더 나은 방식으로 조정

CSR을 위한 유럽연대  
(European Alliance for CSR)



CSR 유럽  
(CSR Europe)





## EU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



• 지침 적용 대상

-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금융사도 포함)
- 자산 총계 2,000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
- 상장사 및 비상장사 모두 포함



• 정보 공개 내용

- 최소 요건
  - a. 환경 이슈                      b. 사회적 문제 및 근로자 관련 문제
  - c. 인권 존중                      d. 반부패 및 뇌물
- 이행 방안 공개
  - a. 실사 과정을 포함한 관련 정책                      b. 정책의 결과
  - c. ESG 리스크 및 관리 방안                      d. 비재무적 성과 지표
- Comply or Explain 원칙: 정보를 공시하거나 비공시 이유 설명 의무



• 지침의 목적

-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 비재무적 리스크와 기회 공개
-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증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 가이드라인: 정보 공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국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유엔글로벌콤팩트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EU의 반부패 정책 동향



EU 회원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1994 EU 출범
- ◆ 1995 EU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한 협약(EU Convention on Financial Interests) 제정
- ◆ 1997 EU 공무원관련 부패 방지 협약(Convention on Fighting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 제정
- ◆ 1997 EU 공무원관련 부패 방지 협약(Convention on Fighting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 제정
- ◆ 1999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형사법 및 민사법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riminal Law & 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제정  
EU 부패방지총국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설립  
유럽평의회 반부패 국가연대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 설립
- ◆ 2003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척결에 대한 결의서 (Framework Decision 2003/568/JHA on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채택
- ◆ 2010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제정
- ◆ 2011 EU 반부패 패키지(EU Anti-Corruption Package) 발표
- ◆ 2016 프랑스 사법2법(Sapin II Law) 제정

# EU 반부패 패키지 (Anti-Corruption Package)



## 1 유럽평의회 반부패 국가연대 (GRECO)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법 및 형법 협약(Civil Law and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에 대한 각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반부패 협력체, EU 회원국 포함 유럽 48개국, 미국 가입

### ✓ GRECO 목표

-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법 및 형법 협약 준수 여부 점검
- 회원국 반부패 제도의 결합 보완 및 개혁 촉구 (상호 평가 및 동료간 압력)
- 모범사례 장려 및 공유 (European Anti-Corruption Platform, PACE)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 및 형법 협약 (1999)

-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은 민법과 부패, 부패 피해자의 손해 배상,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기어(조성), 과실, 계약의 적법성 그리고 부패를 신고한 직원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형법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유럽평의회 부패에 관한 형법 협약'은 최초로 민간분야의 뇌물수수를 범죄로 인정하고 유럽 국가들 간 공조를 통해 부패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명시한다. 특히 공공-민간 부패 결탁에 대해 엄격히 다루며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뇌물 제공, 자금세탁, 회계 부정, 무역에서 부정행위 영합력 행사 등을 단속하고 있다.

### ✓ GRECO 평가 프로세스 및 활동 보고서

① 평가 절차(evaluation procedure)

: 평가 라운드(evaluation round)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혁 등의 권고 사항을 평가

- ✓ 특정 주제에 관한 평가 라운드 진행 (전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
- ✓ 질문지 작성 및 현장 방문 조사
- ✓ 국가별 평가 및 보고서 발표
- ✓ 이행절차 및 권고 발표

② 이행 절차(compliance procedure)

: 각 회원국이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실행한 조치들을 평가

- ✓ 입법적/제도적 사항, 이행 등 권장사항을 적은 권고안 작성
- ✓ 각 회원국의 권고안 이행 조치 평가

GRECO는 매년 발간하는 '활동 보고서(General Activity Report)' 를 통해 매년 회원국의 이행여부를 수치화하여 제시

# EU 반부패 패키지 (Anti-Corruption Package)



## 2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척결에 대한 결의서

2011년 발간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척결에 대한 결의서(2003/568/JHA) 이행에 관한 보고서' 는 뇌물공여행위 및 뇌물수수행위 등 각 조항 별로 각국의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EU 차원에서의 국내법 적용을 강조

-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EU 회원국 전체가 동 결의 조치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으나 전환 국가는 2개국(벨기에, 영국)에 불과

| 뇌물공여행위(Active bribery)   | 뇌물수수행위(Passive bribery)   |
|--|---|
| ①직위를 막론하고 ②민간단체의 관리자 또는 종사원에게 ③그 직무에 위반하여 ④어떤 행위를 행하거나(직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부작위) ⑤그 민간단체의 관리자 또는 종사원 또는 타인에 대하여 ⑥부당한 이득을 ⑦직간접적으로 ⑧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br><br>•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br>• 직간접적인 제공<br>• 관리자/종업원 등 직위를 막론하고<br>• 민간 부문<br>• 부당한 이득을<br>• 해당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해<br>• 그 직무에 위반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 | ①직위를 막론하고 ②민간단체의 관리자나 종사원에 ③자신의 직무를 위반하여 ④어떤 행위를 행하거나(직위) 또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부작위) ⑤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을 ⑦직간접적으로 ⑧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br><br>• 부패를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br>• 직간접적인 제공<br>• 관리자/종업원 등 직위를 막론하고<br>• 민간 부문<br>• 부당한 이득을<br>• 해당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해<br>• 그 직무에 위반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 |

###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척결에 대한 결의서(2003/568/JHA)

- ✓ 민간부문에서 부패를 포함한, 광범위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 형법 기준 및 형량 제시: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형량
- ✓ 법인의 형사적 책임 규정
- ✓ 뇌물공여행위, 뇌물수수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 2. EU 반부패 패키지 (Anti-Corruption Package)

### 3 반부패 보고 메커니즘 (EU 반부패 보고서)

- EU 반부패 보고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아 부패의 효과적인 척결과 회원국들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할 것을 결의
- 부패 척결에 있어 개별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부패척결 노력을 조사 및 평가한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을 보유하도록 촉구
- 이를 위해 2014년 'EU 반부패 보고서(EU Anti-Corruption Report)' 를 발간했으며, 28개 EU 회원국이 방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특정 부패 행위 및 부패 발생 위험, 대응 및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과 조치들에 대해 설명

#### 특정 위험 영역(specific risk areas)

##### - 경미한 부패

EU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패(petty corruption)가 만연하며, 다수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역시 회원국에서 경미한 부패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경미한 부패 근절에 있어 지역차원에서 전반적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원국 내에서 건강 및 보건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지불, 급행료 등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 - 지역 및 지방 단위에서의 부패 리스크

부패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견제와 균형 및 내부통제가 약한 지방에서 높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반부패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 일부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역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지방정부 및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청렴성, 자산 공개, 이해상충 관계에 대한 처벌 및 공공지출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 유럽 내 부패 취약 부분(vulnerable sectors)



##### - 도시개발 및 건설 부문

도시개발 및 건설 부문은 EU 전반에 걸쳐 부패 취약도가 높은 부문이다. 해당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여러 비리사건들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던 일부회원국들에게서 특히 취약하다고 파악되었다. 한 회원국은 이에 대응해 환경 및 도시계획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검찰 조직을 신설하였다.



##### - 건강 및 보건 부문

제약 산업은 다수의 회원국에서 위험 분야로 조사되었다. 현재 여러 회원국에서 보건 부문 내 부패 근절을 위해 개혁과 전략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공공조달 부문과 제약부문에서의 부패와 비공식적인 지불 등의 문제를 명시하였다.

## 유럽 주요국 반부패 법과 제도 및 사례

### Legal & Institutional System and Cases of Major EU Countries

## 유럽 주요국의 반부패 법과 제도



▪ 영국 - 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2010)



▪ 독일 - 부패방지법(Act to Combat Corruption 2015)



▪ 프랑스 - 사팽2법 (Sapin II Law 2016)



▪ 스웨덴 - 형법



▪ 네덜란드 - 형법



## 영국 - 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2010)



### ✓ 반부패 환경



사법제도

- 독립, 책임,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법 체계와 독립적인 사법부
- 사유 재산권, 계약, 지적 재산권 등 기업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상업분쟁 해결 및 정부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법체계
- 외국인 소유 재산의 보호 및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 법적 소송 가능
- GRECO는 영국 재판부, 검찰청의 부패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평가
- 재판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E-러닝(예: 사법 행동과 윤리모듈)을 활용해 체계적인 부패방지 훈련 실시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CSID),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 비준



공공조달

- 국립사기범죄관리청(National Fraud Authority)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패로 매년 약 23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 기업의 4분의 1가량이 조달 사기를 경험하고, 기업 관리자 5분의 1가량이 부정부패로 인해 경쟁 입찰을 따낼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수주를 위한 뇌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조달 공무원의 편파성 정도는 중간으로 평가함
- EU 공공조달 행정지침에 기반하여 기업에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범죄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공조달 참여자격 박탈 (2015년 영국 공공계약법(UK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 감사위원회 해체로 지역 공공조달에서의 효과적인 사기, 부패 적발이 어렵다고 평가됨
- 사업운영 시 전문적인 실사 절차를 통해 부패 연루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권장함

| 적용 대상  | 법적 제재  |
|--|--|
| <p>영국 기업 및 자회사,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영국 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모두에게 적용되며, 부패 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p> <p>1) 뇌물 공여자 - 영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 및 단체<br/>- 영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 파트너, 대리인</p> <p>2) 뇌물 수수자 - 외국 공무원<br/>- 관련된 기능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 임무 담당자<br/>① 공무원은 아니나, 공적인 성격의 임무 종사자<br/>②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임무 종사자<br/>③ 사업, 무역, 전문직업, 고용관계 등과 관련된 활동의 종사자</p> | <p>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제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고 있다. 위반 시 처벌규정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 재산 몰수와 이사 직책의 박탈까지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p> <p>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p> <p>1) 개인의 경우 - 최고한도 없는 벌금형<br/>-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형사처벌 중복 부과 가능</p> <p>2) 법인의 경우 - 최고한도 없는 벌금형<br/>- 공공계약 입찰 참여 금지<br/>- 법적 수익 반환</p> |



## 영국 - 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2010)



영국 뇌물수수법은 금행료(facilitation payment)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공급망 및 대리인 등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부패 행위에 있어서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 있어 실사(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기업의 반부패 노력에 따른 항변권을 보장하여, 기업의 뇌물예방 절차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 영리단체의 부패 예방을 위한 6대 원칙

1. 위험에 비례하는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4. 실사 (Due diligence)
5. 교육을 포함한 의사소통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모니터링과 검토 (Monitoring and review)



### 기업 위반 사례



스위트그룹(SWEETT Group)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

▶ 스위트 그룹과 스탠다드은행은 영국 뇌물수수법의 7조(section)를 위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패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중대비리 조사청(SFO)에 협조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 사례는 부패 범죄 발생 시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벌금이 감액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독일 - 부패방지법 (Act to Combat Corruption 2015)



### ✓ 반부패 환경



토지행정

- 부패 리스크가 큰 분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역 당국과 기업 간 유착
-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가능성 높음
- 토지 물수는 공적인 목적으로만 실시되며 비차별적 원칙을 준용함
- 부동산 등록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등록 비용도 증가함



공공조달

- 부패 리스크가 큰 분야: 부정 입찰, 이해 상충, 입찰자 개입, 불명확한 선정, 평가 기준의 편향성 등
-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뇌물수수 및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입찰자는 계약 수주에서 제외.
- 부패 방지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 이행 권장

| 적용 대상  | 법적 제재   |
|--|---|
| <p>1) 공공 부문의 뇌물 - 공무 수행 중 뇌물 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위반의 대가로 뇌물 수수</li> <li>- 공무 수행 중 뇌물 공여</li> <li>- 의무 위반의 대가로 뇌물 공여</li> </ul> <p>* 뇌물 수수 적용 대상: 공무원, 유럽연합/국제형사재판소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군인, 독일/유럽연합/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 또는 중재인</p> <p>2) 민간 부문의 뇌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부당 이익을 위한 뇌물 공여 및 수수</li> <li>- 해외에서 발생한 뇌물에도 적용됨</li> </ul> | <p>1) 개인 -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형</li> <li>- 자격정지</li> </ul> <p>2) 기업 - 형사 책임 적용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형</li> <li>- 과태료 부과</li> </ul> |



## 독일 - 부패방지법 (Act to Combat Corruption 2015)



### ✓ 보건의료분야의 반부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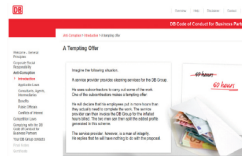
2016년 독일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법안을 도입

#### ● 처벌대상 및 처벌내용

- 보건의료 전문가가 의약품 공급조달, 처방, 조제와 관련한 부당 특혜를 타인에게 요구, 제공, 허락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구형
-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부당 특혜를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자 또한 최대 3년을 구형
- 신규 법안은 특정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뒷돈(kick back)을 금지할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병원, 의료기기, 제약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상여금(referral bonuses) 또한 금지. 의사뿐 아니라 학계의 보건전문가,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등에게도 적용



기업 우수 사례



#### ● 상황 (출발점)

- 독일국영철도기업의 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는 업체에 현금급을 하는 업체가 실제 근무 시간을 부풀려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입찰가 제안을 거절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현금급 입찰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
- 불공정한 비리나스, 공행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서비스 입찰자가 현금급자와 동의하였던, 둘 다 사기죄 및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서비스 입찰자가 현금급 입찰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현금급 입찰자의 행위를 묵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다.

#### ● 컨설턴트, 대행사, 중개업체

- 상황: DB 그룹으로부터 고충을 기록대행사의 다목적 컨설턴트를 통해 대규모 사업확대를 승인받으려 한다. 컨설턴트는 구체적인 위장명령을 잘 알고 있고, 기록대행사에게 위장명령을 제공할 계획을 알린 상황이다.
- 비리나스, 파르나, 고계,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턴트, 대행사, 보로키, 중개업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록대행사는 비리나스, 파르나인 컨설턴트가 독일국영철도회사의 행동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컨설턴트와 중개인: 독일국영철도기업은 컨설턴트, 대행사, 중개업체를 영계한 가운데 선발하므로, 독일국영철도기업의 비리나스, 파르나에 대한 의무를 선발에 반영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 이의: 기대 및 선물

- 기대 및 선물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 ① 기대 및 선물이 적절해야 한다
  - ②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다른 이득이나 혜택을 주거나 받을 때에도 해당이 되어 제3자를 통한 불법적인 혜택 또는 손상하지 않는다.



## 프랑스 - 사팽2법 (Sapin II Law 2016)



### ✓ 반부패 환경



조세행정

- EU집행위원회 설문(2014)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프랑스에 탈세가 만연하다고 응답함
- 기업은 프랑스의 조세 환경, 높은 법인세율이 사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함
-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6년 법인세를 인하, 세액공제를 인상, 신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혜택제도 연장을 발표함



공공조달

- 프랑스 내에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문
- 기업은 부패로 인해 공공조달이 기업, 개인/단체로 유용될 때가 있으며 계약 선정 시 편파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됨
- 관료주의, 부담스러운 절차, 특정기업에 유리한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프랑스의 공공조달 조항은 EU 법적구제 지침(EU Directive on Remedies)에 의거해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입찰자를 보호함
- 프랑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 내 반부패 시스템을 수립/강화하고, 실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함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프랑스 형법과 2016년 통과된 사팽 2법이 있음. 프랑스 형법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국내 및 외국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선물과 급행료 역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기업들이 연이어 해외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으로 기소되자, 프랑스는 2016년 12월 9일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제고, 부패 척결, 공공행정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를 증진을 위해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및 경제적인 삶의 현대화(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법안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법안을 제출한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의 이름에 따 '사팽 2법(Sapin 2 Law)' 으로서 불림.
- 2017년 6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의무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반부패 기구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FAC)**  
 부정부패의 적발과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를 설립하여 자체 조사 또는 법무부 및 내부의 권고에 따라 준법 실패에 대한 경고, 벌금 부과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권고안을 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사팽 2법은 프랑스 반부패 기구(FAC)에 기업들의 준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였다.

| 적용 대상  | 법적 제재  |
|--|--|
| 1) 프랑스 기업 및 기업 대표자/경영진<br>-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 규모 1억 유로 이상인 공기업과 민간기업<br><br>2) 프랑스 내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관계 회사<br>-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 규모 1억 유로 이상인 기업의 프랑스 지사 또는 기타 관계 회사<br><br>*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는 대표자 및 기업 모두가 부패 예방 실패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공기업 및 민간 기업 등 부패에 연관된 법인과 경영진(회장, CEO, 이사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는 아래와 같다.<br><br>1) 프랑스 반부패기구의 경고, 특정 기간 내(최대 5년) 준법 프로그램의 수정 및 실행 명령<br><br>2) 벌금 부과 - 개인: 최대 20만 유로<br>- 법인: 최대 1백만 유로<br><br>3) 프랑스 반부패 기구의 결정(위반사항, 처벌 및 판결, 권고)이 담긴 보고서 공개 |

✓ 반부패 환경



토지행정

- 토지행정의 부패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2015)'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의 3분의 1, 수수 혐의의 5분의 1가량이 건설과 토목공학 부문에서 발생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스페셜 바로미터 397 - 부패보고서 (2014)'에 따르면, 스웨덴 시만의 절반가량이 건설 허가를 발행하는 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와 권력남용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 사유재산의 몰수는 차별없이 공적인 목적으로만 실시되며,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주어짐
- 부동산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으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공공조달

- 중앙 부처보다 지역 당국의 공공조달이 부정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지방자치 당국의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공정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특히 공공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두드러짐
- 이해상충에 대한 감시 절차가 미비하여 잠재적인 부패 리스크가 존재함

✓ 스웨덴 형법

- 스웨덴 형법은 대부분의 공직 및 민간부패를 금지. 뇌물죄에 관한 기본 조항은 형법에 있으며, 2012년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현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스웨덴의 글로벌 사업에 더 적합하게 만들고자 개정
- 사업상의 선물, 보상, 기타 이득에 관한 규정이 스웨덴의 반부패 기구인 부패방지 연구소 (Institutet Mot Mutor)의 주관 하에 제정되어, 형법의 부속조항으로 마련



뇌물죄의 형태

1. 뇌물 수수
2. 뇌물 공여
3. 중뇌물 수수 및 공여
4. 불법적 영향력 행사
5. 과실로 인한 뇌물 조달



**스웨덴 부패방지 연구소 (Institutet Mot Mutor, IMM)**  
 스웨덴의 반부패 기구인 IMM은 1923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서 사업 분야 및 기타 사회 분야에서 윤리적인 결정과정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뇌물 및 부패 수단을 쓰는 것을 방지한다.



## 스웨덴 - 형법



뇌물죄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수행함

-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함
- 기업 윤리 관점에서 기업을 제도함
- 동등한 조건 하에서 시장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킴
- 기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킴. 시장이 기업 윤리적 관점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 대하여 대중이 신뢰하도록 함



### 적용 대상 및 법적 제재

| 기업  | 개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li> <li>- 벌금형: 5,000크로나 ~ 1만 크로나 (형법 제36장)</li> <li>- 뇌물 공여 또는 수수 행위가 법인의 이름 또는 대표이사, 기타 고위 경영진에 의해 행해지거나, 이러한 행위가 예상되었음에도 그 방지에 실패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행위 또는 회사를 대리하여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음</li> <li>- 과실로 인한 뇌물 조달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CEO 혹은 고위경영진)만을 대상으로 함</li> <li>- 그 밖의 모든 부패 범죄 행위는 밀고 있는 역할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됨</li> </ul> |



### 기업 사례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

스웨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부분 국유 통신 기업인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 사건이 있다. 텔리아소네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액의 계약을 따내는 대가로 미화 3억2천만 달러를 뇌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금액은 지브롤터에 등록된 정채불명의 회사에 수년간 지급되었고, 이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딸인 굴나라 카리모바(Gulnara Karimova)의 소유로 밝혀졌다. 텔리아소네라 전직 임원 세 명과 카리모바를 포함한 네 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용의자로 특정되고, 조사를 받았다. 텔리아소네라는 나중에 카자흐스탄과의 사업에서도 협력 업체가 대통령 가족의 측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부패혐의를 받게 되었다. 국제 법률회사인 로튼 로즈 폴브라이트가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텔리아소네라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네팔, 타지키스탄에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텔리아소네라는 2015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철수를 하였다.



이케아(IKEA)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는 건설허가 지연 및 정부 관리의 뇌물 요구 등 러시아에서의 부정부패로 인해 사업상 난항을 겪고 있다. 이케아는 2006년 러시아 진출 당시 주정부 건설감독부의 건설허가 발급 지연으로 인해 8차례 정도 개장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전력회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이케아 러시아의 고위 임원 두 명이 중개인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회사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받았다. 이케아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동시에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Ingvar Kamrad)는 부패가 만연한 러시아에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 부패무관용 방침을 적용하였다. 이케아는 계약체결 과정에 뇌물 수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목격한 고위 임원을 즉각 해고하였다



## 네덜란드 - 형법



### 반부패 환경



사법제도

-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와 높은 대중의 신뢰
- 기업은 네덜란드 사법제도가 분쟁 해결 및 정부 규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함
- 네덜란드 기업상공회의소: 상업분쟁 해결을 전담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 분쟁 해결은 평균 3~12개월 소요
- 단, 소송절차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CSID),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 비준



공공조달

- 네덜ланд는 EU에서도 공공조달 부패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의 개발능력이 상위권임
- 건설 부분의 공공조달에서는 부조리한 관행, 지역공무원과 기업 간의 공모, 카르텔 형성 등이 드러난 바 있음
- 조달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 권고함

### 네덜란드 형법

- 네덜란드 형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뇌물 제공과 수수에 대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도 같음.
- 네덜란드 의회는 2014년 말 형법을 개정하여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최대 6년, 판사의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최대 12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함. 기업의 부패에 대한 벌금은 해당 기업의 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로 상향 조정됨

| 적용 대상           | 법적 제재   |
|-----------------|---|
| 공무원의 뇌물 공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6년의 징역 and/or 78,000 유로의 벌금</li> <li>- 자격정지, 특정 권리 박탈</li> </ul>  |
| 공무원의 뇌물 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취득 자산 몰수</li> <li>- *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ex. 장관, 시장 등)은 징역형이 8년까지 / 판사의 경우 9~12년까지 연장가능)</li> </ul>   |
| 민간인의 뇌물 공여 및 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4년의 징역 and/or 78,000 유로의 벌금</li> <li>- 자격정지 및 특정 권리 박탈 (ex. Certificate of Conduct 발급 불가, 체류 허가 신청 불허 등)</li> <li>- 불법 취득 자산 몰수</li> <li>- * 기업의 경우 벌금은 81,000 유로 또는 연매출의 10%까지 증액될 수 있음</li> </ul> |





## 네덜란드 - 형법



### 기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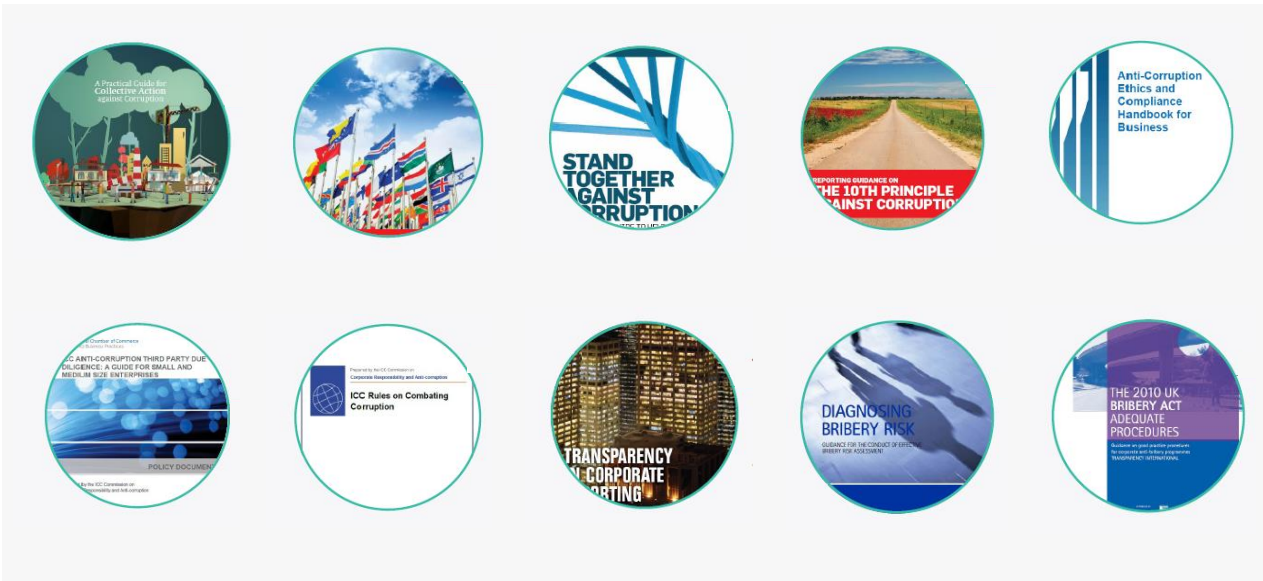
**"신뢰는 오로지 투명성에서 나온다"**

- Paul Polman, 유니레버 CEO

- 유니레버는 자사의 12원칙 중 첫 번째 원칙으로 '비즈니스는 적법하고 청렴에 기반하여 행해져야 한다' 라고 청렴성을 강조함
- <비즈니스 원칙 강령>을 통해 24개 내부 강령 정책을 규정하고, 필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안내함
- 다음은 이행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강령임

| 필수사항   | 금지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이 공무원, 실질적·잠재적 경쟁자, 고객, 공급자 중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상사 및 기업윤리 관리자와 상의하여야 한다.</li> <li>-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이 자사에 투자하는 경우 직속상사 및 기업윤리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br/>(예외: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연금 기금, 물가연동기금, 트랙커펀드와 연관되면서 유니레버가 지정한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li> <li>-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시 직속상사 및 기업윤리 관계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수행 중 유니레버의 이익과 관련된 기회를 타사에 돌리는 행위를 금한다.</li> <li>-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들의 개인적, 재정적,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li> <li>- 직속상사 및 기업윤리관리자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경쟁사, 고객, 공급사를 위해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li> <li>- 상사 및 기업윤리 관리자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행위를 금한다.</li> </ul> |

##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주요 자료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

## 사례 발표: 에릭슨

권순엽

에릭슨

동북아시아 준법지원 총괄/상무

## The Fair Player Club Seminar



DAVID SY KWON,  
COMPLIANCE OFFICER, NORTH EAST ASIA  
JUNE 21, 2017



1. GLOBAL INITIATIVES
2. REGIONAL INITIATIVES
3. LOCAL INITIATIVES
4. Q & A



# REGIONAL COMPLIANCE OFFICE - ORGANIZATION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5



Ericsson's policy is zero tolerance against corruption which is adopted in the Code of Business Ethics and applied through out the organization.

# ERICSSONS ANTI-CORRUPTION PROGRAM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7

# ERICSSON GROUP



## CONDUCTING BUSINESS RESPONSIBLY

### EVERY ACTION COUNTS

Conducting business responsibly, with integrity and transparency, is at the heart of our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 STANDING STRONG ON ANTI-CORRUPTION



We encourage our more than 100,000 employees around the world to get involved in Sustainability and CR:

99%

acknowledged our Code of Business Ethics

94 000+

have taken anti-corruption training

0

major incidents is our vision, and we have a global program to prevent injuries and work-related ill health

<https://www.ericsson.com/res/thecompany/docs/corporate-responsibility/2015-corporate-responsibility-and-sustainability-report.pdf#responsible-business>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8

# WHY BUSINESS PARTNER REVIEW ("BPR") BOARD?



- › Business risks from 3<sup>rd</sup> parties are getting higher
- › Anti-bribery legislations are getting severe
- › As a listed company in Swedish/U.S. stock market, Ericsson is obligated to ensure all Ericsson entities comply with legal requirements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9

# REGIONAL COMPLIANCE FORUM



Separately, 10 Regional Compliance Forums.

## Business Partner Review Board



## Compliance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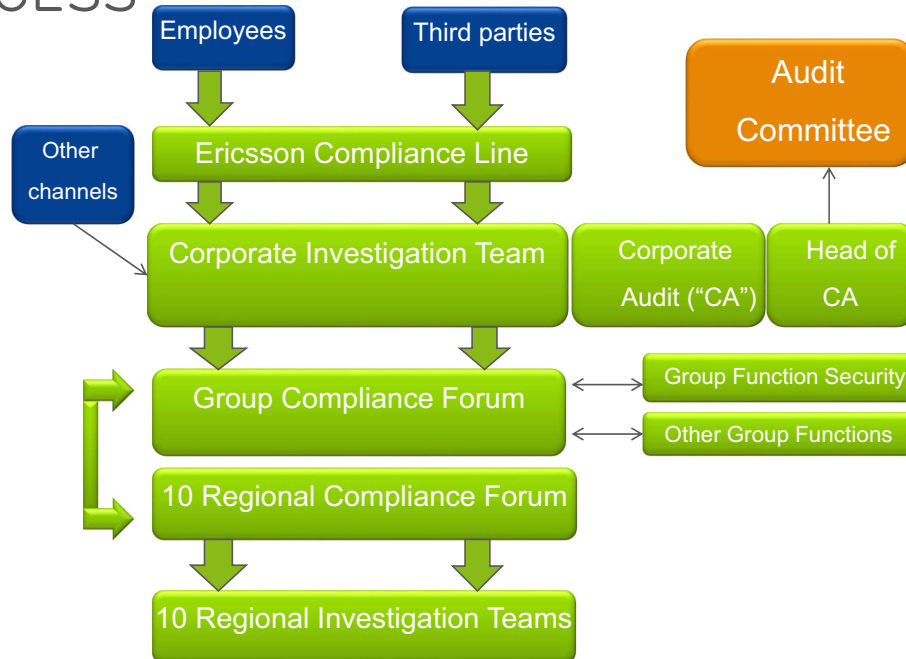
**Looking Forward**



**Looking Backward**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10

# HANDLING OF COMPLIANCE CONCERNS: WHISTLEBLOWER PROCESS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11

## 2. Regional Initiatives

- CoBE completion rate: competition
- BPR Board implementation
- Supplier Integrity Screening (“SIS”) program roll-out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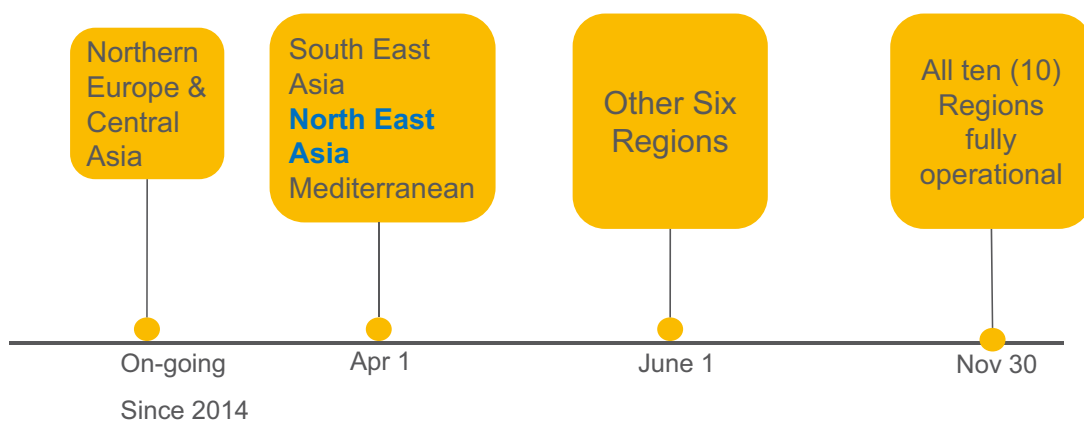


# COBE COMPLETION RATE: COMPETITION



| Country   | By end of 2016 | By end of Q1, 2017 | Remarks                           |
|-----------|----------------|--------------------|-----------------------------------|
| China     | 91.21%         | 91.92% (8.08%)     | Slightly enhanced                 |
| Hong Kong | 99.51%         | 100% (0.00%)       |                                   |
| Japan     | 98.27%         | 98.29% (1.71%)     |                                   |
| Taiwan    | 99.65%         | 99.65% (0.35%)     | No change                         |
| S. Korea  | 100%           | 99.77% (0.23%)     | several employees hired during Q1 |

# THE BPR BOARD (NEA) IS OPERATIONAL SINCE APRIL 1



# WHO SITS IN THE BOARD?



## Participants

- › Sponsor
  - Head of MNEA
  
- › MNEA BPR Board members:
  - Head of Legal Affairs (Chairperson)
  - Head of Finance
  - Head of Commercial Management
  - Head of Sourcing
  - Compliance Officer (Secretary)

# AUTHORITY



- › **Final & binding** decision to approve or reject business dealings with a business partner and/or a specific deal structure in the territory of MNEA by Customer Unit, Business Unit, Customer Group.
  
- › In case of conditional approval, it is mandatory to take actions to meet such conditions.

# WHAT? BUSINESS PARTNERS



- › Customers
- › Sales Partners
- › Suppliers
- › Joint Operations
  
- › Starts with new Business Partners
  
- › In 2017, focus on Sales Partners and Suppliers.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17

## Key Factor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BPR process.....



- How to overcome strong challenges from business teams
- How to respond to tons of questions from stakeholders.
- How to focus on “core issues”
- There are nothing that cannot be resolved with honest and sincere communications!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18

# SIS PROGRAM: ROLL-OUT



## › Purpose:

For all supplier screening against a wide array of integrity database and lists (sanctions lists, warning/black lists, adverse media) by using a cloud-based tool provided by Dow Jones.

## › Current Status:

After a pilot in Northern Europe & Central Asia, the roll-out in 2 regions have been done and the roll-out in North East Asia is well underway.



## 3. Local Initiatives

- CoBE on-line/off-line training
- Local anti-corruption law training
- Anti-corruption initiatives from sourcing team

## ANTI-CORRUPTION TRAINING IN KOREA



- > Mandatory Anti-corruption e-learning for all employees.
- > For clear and better understanding of contents by local employees, Korean subtitles reviewed by local in-house counsels are provided.
- > Quarterly monitoring on completion rate by org. level and remind unfinished employees to encourage completion in a timely manner.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21

## NEW ANTI-BRIBERY LAW TRAINING



- > Mandatory training on new anti-bribery law (A.K.A. Kim Young-Ran Act) to all employees immediately after its promulgation in Mar. 2015, and keep them updated.
- > Separately, a customized deep-dive training to key employees having frequent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or deemed public officials.
- > Set up a stricter internal policy for customer gift aligned with new anti-bribery law (exceeding KRW 100,000 for funeral/wedding/other gifts: approval from Company Head & Region Legal Head)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22

# ANTI-CORRUPTION INITIATIVE FROM SOURCING



- › SPL (Sanctioned Party List) screening by a local sourcing team before making a contract with any new supplier.
- › Mandatory condition (S-CoC including Anti-corruption) for Standard Purchasing Agreement

## 15. CODE OF CONDUCT AND COMPLIANCE WITH LAW

- 15.1. Seller shall uphold the Supplier Code of Conduct (S-CoC) by taking an education course or by reading an educational material of the S-CoC. Seller shall comply with S-CoC and undertake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specified therein. (Please refer to internet website: [http://www.ericsson.com/ericsson/corporate\\_responsibility/suppliers/index.shtml](http://www.ericsson.com/ericsson/corporate_responsibility/suppliers/index.shtml)).
- 15.2. Seller warrants that it will comply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r countries) having jurisdiction over Seller.
- 15.3. In case Seller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15.1 or 15.2, Ericsson may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seek remedy for damages incurred to Ericsson which is attributable to Seller's failure to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15.1 or 15.2. Seller shall not be excused from liability under Article 15 due to the fact that Seller is not aware of such obligations.

# ANTI-CORRUPTION INITIATIVE FROM SOURCING



- › Anti-corruption for Suppliers on-line training [Link](#)

Since 2015, Korea Sourcing team has been providing on-line training content for suppliers in Korean.

- › Supplier Code of Conduct Audit

From 2017, a 3<sup>rd</sup> party audit firm is conducting S-CoC audit on behalf of Ericsson local entity.

However, a local sourcing team is still monitoring their audit performance and then review the audit report/ follow up corrective action results.



# Q & A



# APPENDIX

# MNEA BPR Board Intranet site:



**WELCOME TO MNEA BUSINESS PARTNER REVIEW (BPR) BOARD**

This site was created for ensuring a smooth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MNEA BPR Board.

**ANNOUNCEMENTS**

| Title                      | Modified         |
|----------------------------|------------------|
| MNEA BPR Board Instruction | 18-04-2017 06:48 |

**USEFUL LINKS**

- LEGAL COMPLIANCE AREAS
- ERICSSON ACADEMY LEGAL
- REPORTING COMPLIANCE CONCERNS

**CONTACT**

For Application to BPR Board: Group Mail Box  
MNEA.BPR.Board@ericsson.com

For Prior Consultation: The Secretary of the BPR Board  
david.soonyoub.kwon@ericsson.com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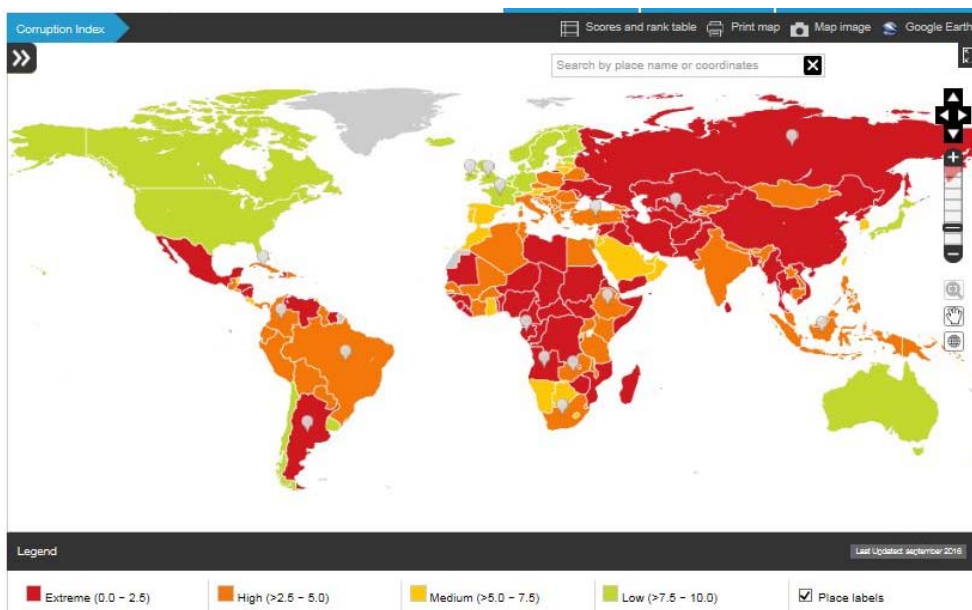
| JUNE 2017 |    |    |    |    |    |    |
|-----------|----|----|----|----|----|----|
| M         | T  | W  | T  | F  | S  | S  |
| 29        | 30 | 31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NOTES**

David Soonyoub Kwon 08-06-2017 03:02  
The 1st and 2nd MNEA BPR Board regular meeting were held in April and May, respectively.  
- 1st regular meeting: April 27 at 1pm / VC room at CBC  
- 2nd regular meeting: May 31 at 1pm / VC room at CBC

**USEFUL DOCUMENTS**

# VERISK MAPLECROFT 2016 CORRUPTION RISK MAP





# VERISK MAPLECROFT RISK SCORECARD FOR CORRUPTION INDEX



| Location          | 2015-Q2 | 2015-Q3 | 2015-Q4 | 2016-Q1 | 2016-Q2 | 2016-Q3 | 2016-Q4 | 2017-Q1 | 2017-Q2 | Trend |
|-------------------|---------|---------|---------|---------|---------|---------|---------|---------|---------|-------|
| China (main land) | 2.62    | 2.62    | 2.62    | 2.15    | 2.15    | 2.15    | 2.15    | 2.15    | 2.15    |       |
| Hong Kong (China) | 7.23    | 7.23    | 7.23    | 9.13    | 9.13    | 9.13    | 9.13    | 9.13    | 9.13    |       |
| Taiwan            | 6.30    | 6.30    | 6.30    | 6.30    | 6.30    | 6.30    | 6.30    | 6.30    | 6.30    |       |
| Japan             | 7.42    | 7.42    | 7.42    | 9.71    | 9.71    | 9.71    | 9.71    | 9.71    | 9.71    |       |
| South Korea       | 6.72    | 6.72    | 6.72    | 5.48    | 5.48    | 5.48    | 5.48    | 5.48    | 5.48    |       |

| Note:          |           |  |
|----------------|-----------|--|
| Extremely High | 0.0-2.5   |  |
| High           | <2.5-5.0  |  |
| Medium         | <5.0-7.5  |  |
| Low            | <7.5-10.0 |  |

The Fair Play Club Seminar | Ericss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 2017-06-15 | Page 29



# ERICSSON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

## 사례 발표: 볼보건설기계

프레드릭 루에쉬  
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 부문 사장

# Volvo Group 2016

Day in and day out, all around the year, people's decisions and basic needs create demand for transports and infrastructure solutions. Without the type of products and services the Volvo Group provides, the societies where many of us live would not function. Together we move the world

Volvo Group Headquarters

**VOLVO**

The Volvo Group, which employs about 100,000 people, has production facilities in 18 countries and sales of products in more than 190 markets.

Volvo Group Headquarters

**VOLVO**

**On the road**

**In the city**



**Off road**

**At sea**

Volvo Group Headquarters

**VOLVO**

## The employer of choice

### **Customer success**

We make our customers win.

### **Trust**

We trust each other.

### **Passion**

We have passion for what we do.

### **Change**

We change to stay a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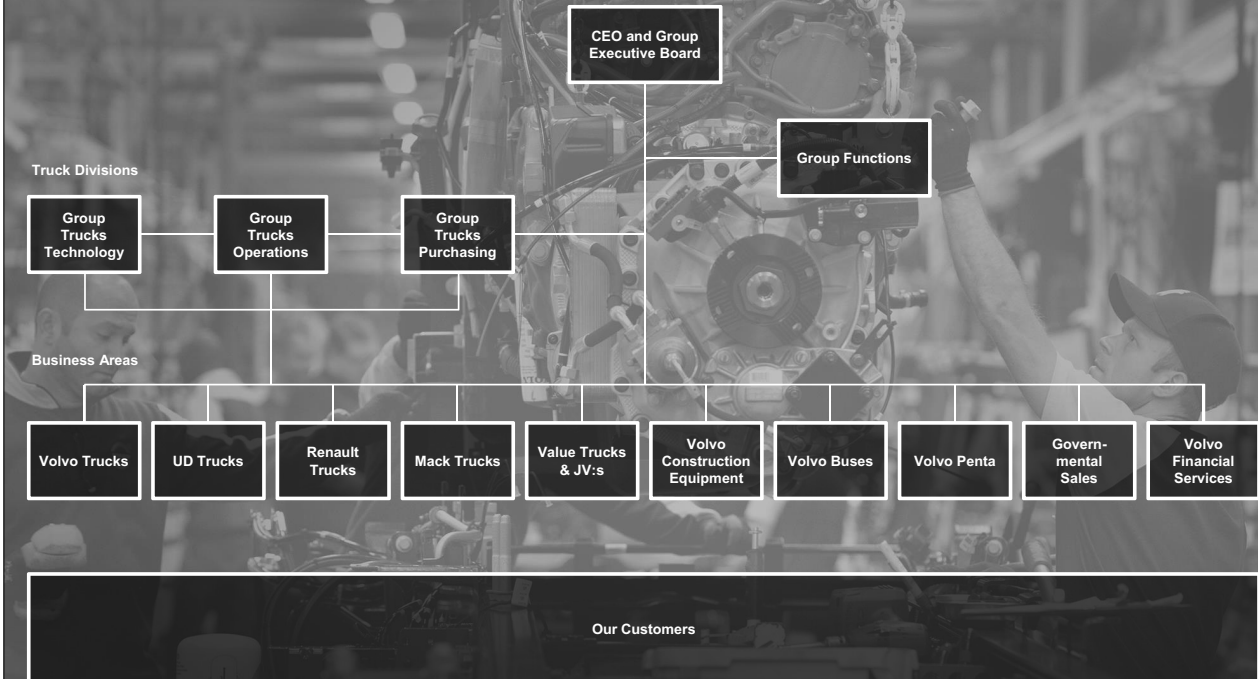
### **Performance**

We are profitable to shape our future.

Volvo Group Headquarters

**VOLVO**

# Our Organization



## Our history – human centric since 1927



1927 Volvo is founded by Assar Gabrielson and Gustaf Larson, who decide to create safe vehicles of high quality. The first passenger car is manufactured in Gothenburg and in the following year, the first truck — an instant success.



In the following decades, Volvo grows into a Group and a number of operations come into existence: the manufacture of car, marine and industrial engines, buses, construction equipment and components for the aircraft industry.



A series of company acquisitions in various industry segments further strengthens the Group.



Volvo Group Headquarters

**VOLVO**

# Our history – human centric since 1927



1999 Volvo Cars is sold to the Ford Motor Company.

2001 Volvo Group acquires Renault Trucks and Mack Trucks.



2007 Volvo Group acquires Nissan Diesel (currently known as UD Trucks).

2007 Volvo Group acquires Lingong, Chinese manufacturer of construction equipment.



2008 Establishment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Volvo Eicher Commercial Vehicles together with Eicher Motors Ltd.

2012 The aerospace component company Volvo Aero is sold to the British engineering group GKN.

2014 Volvo Group acquires Terex Tru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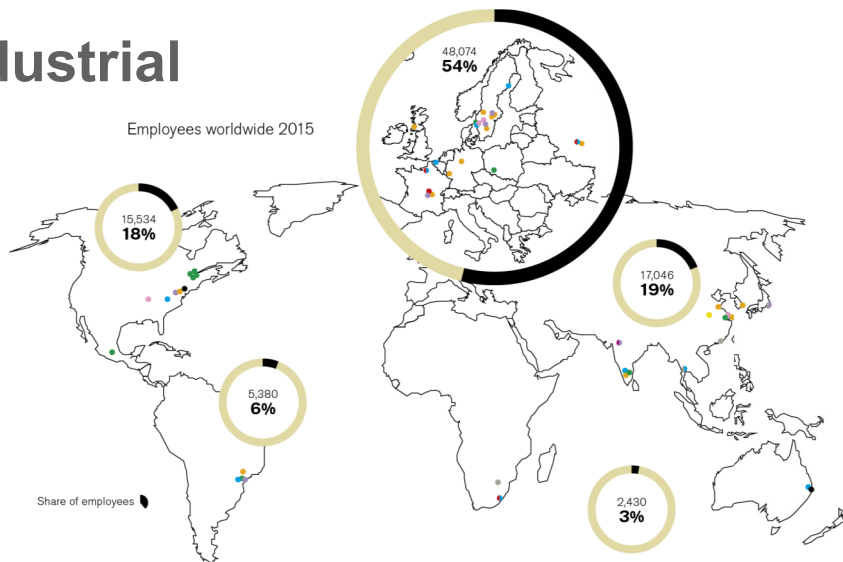
2015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alliance Dongfeng Commercial Vehicles together with Dongfeng Motor Group Company Ltd.

Volvo Group Headquarters



## Global industrial structure

Employees worldwide 2015



| MAJOR PRODUCTION FACILITIES | NORTH AMERICA   | SOUTH AMERICA   | EUROPE  | ASIA   | OTHER MARKETS              |
|-----------------------------|---|-----------------|---|--|----------------------------|
| ● Volvo Trucks              | New River Valley (US)   | Curitiba (BR)   | Blainville (FR), Göteborg, Umeå (SE), Gent (BE), Kaluga (RU)  | Bangalore (IN), Bangkok (TH)                         | Brisbane (AU), Durban (ZA) |
| ● UD Trucks                 |   |                 |   | Ageo (JP), Hangzhou* (CN), Bangkok (TH)              | Pretoria (ZA)              |
| ● Renault Trucks            |   |                 | Blainville, Bourg-en-Bresse (FR), Kaluga (RU)   |  | Durban (ZA)                |
| ● Mack Trucks               | Muncie (US)   |                 |   |  | Brisbane (AU)              |
| ● Eicher*                   |   |                 |   | Pithampur* (IN)                                      |                            |
| ● Dongfeng Trucks*          |   |                 |   | Shiyao* (CN)   |                            |
| ● Engines and transmissions | Hagerstown (US)   | Curitiba (BR)   | Köping, Skövde (SE), Vérisieux (FR)   | Ageo (JP), Pithampur* (IN)                           |                            |
| ● Construction Equipment    | Shippensburg (US)   | Pederneras (BR) | Arvika, Braks, Eskilstuna, Hallberg (SE), Konz-Köthen, Hameln (DE), Bellef (FR), Kaluga (RU), Motherwell (UK) | Changwon (KR), Shanghai, Linyi* (CN), Bangalore (IN) |                            |
| ● Buses                     | St Claire, St Eustache, St Francois du lac (CA)<br>Mexico City (MX), Plattsburgh (US) | Curitiba (BR)   | Borås, Uddevalla (SE), Wrocław (PL)   | Bangalore (IN), Shanghai* (CN)                       |                            |
| ● Volvo Penta               | Lexington (US)  |                 | Göteborg, Vara (SE)   | Shanghai (CN)  |                            |

\* Ownership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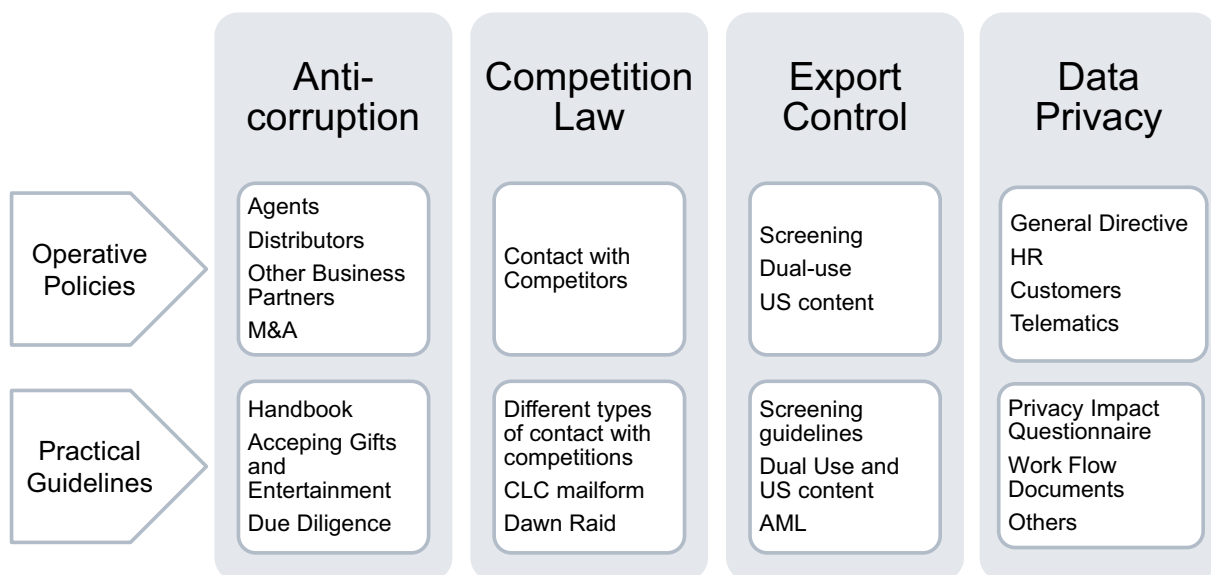
Volvo Group Headquarters



# Compliance Policy

- Definition of risk areas (anti-corruption, competition law, data privacy, export control)
- **Bo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ies:**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authorised to manage the on-going follow-up of the Compliance efforts
- **Chief Compliance Officer's responsibilities:** Design and develop the Compliance Programmes, lead its implementation and lead investigations into alleged non-compliance.
- **TD/BA responsibilities:** complete AC, CLC and CoC e-learning within three months of joining the Volvo Group and thereafter at least once every three years, and attend Face-to-Face mandatory each 3 years (both methods White Collar employees)
  - **Compliance Network:** members of the Legal & Compliance Group Function, generally one representative per TD/BA/GF + local Compliance Officers in China, Brazil and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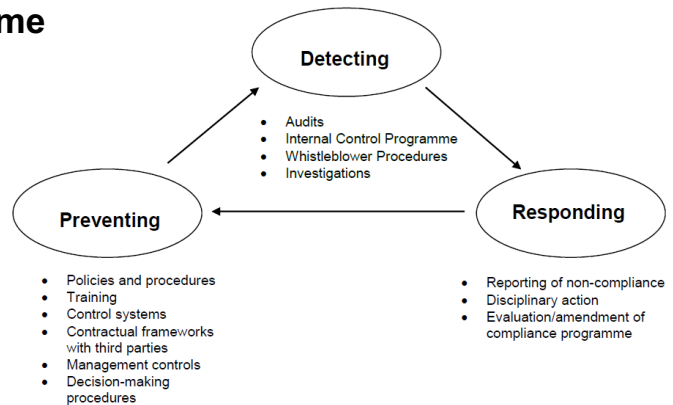
# Compliance Programmes Structure



# Anti-corruption Programme

The Volvo Group Code of Conduct is our driver

- The **Compliance Policy** outlines the Compliance Programmes
- The **Anti-corruption Programme** outlines actions, tasks and responsibilities in preventing, detecting and responding to corruption:



## Anti-corruption policies and guidelines <sup>1/2</sup>

- High level guidance on gifts and entertainment:
  - **Anti-corruption Handbook** regulating the offer of hospitality to public and/or private sector employees
  - **Guidelines on accepting gifts and entertainment**, as a Volvo Group employee
    - Certain countries have their own **specific guidelines** with monetary thresholds: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 For specific events, there are separate travel policies (e.g. **Volvo Ocean Race**)



# Anti-corruption policies and guidelines <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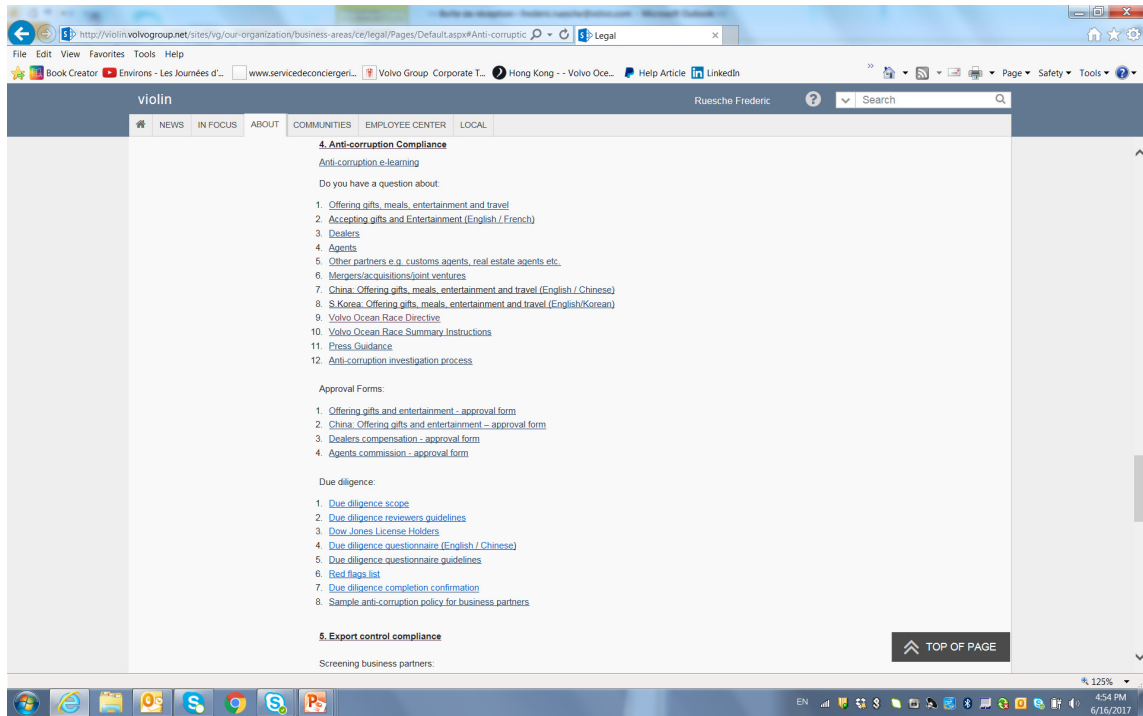
- Policies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olvo Group companies and Business Parties:
  - **Agent and commission policy**
  - **Policy concerning distributors**
  - **Due diligence and template clauses in agreement with other business partners**
  - **Due diligence and template clauses for mergers & acquisitions and joint ventures**
- **Compliance Anti-corruption due diligence reviewer guideline**

## High Awareness of Compliance for Volvo Group Korea

Comply with Korean Regulations & Volvo guidelines

- Focus on **Internal Control programme** since the beginning of 2000
  - Process assessment including Management control etc.
- Provide Face-to-Face **Compliance training** annually since 2010
  - Cascade high awareness of compliance to all white collar employees (1050 wc employees by end of 2016)
  - Attended more than 95% white collar employees in FtF training, and provided on-line training for others
- High priority to comply with **Local regulations**
  - Assess **Privacy Law Compliance** every year with qualified 3<sup>rd</sup> party
  - Reinforce compliance with **new guidelines on accepting gifts and entertainment** in line with regulation(Kim Youngran's law) in 2016

# Anti-corruption e-learning



Volvo Group Headquarters



**TOGETHER WE MOVE THE WORLD**

Volvo Group Headquarters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

안젤라 강주현 상임대표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Fair Player Club 소개 & 반부패 서약 안내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상임대표

2017년 6월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_개요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페어플레이 (Fair Play)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은 페어플레이 (Fair Play) 정신에서 따온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페어플레이 (Fair Play) 정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입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목표 1 협력 구축

반부패 증진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기업, 기업 협회, 정부, 정부 관련 기관, 반부패 전문기관들과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을 위한 민관협력포럼 구성

#### 목표 2 역량 구축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위한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반부패 정책 등과 관련된 윤리강령, 가이드라인 및 기업 사례 공유 및 교육

#### 목표 3 합의 구축

준법·윤리경영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별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한 공동노력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_관련 기관 소개

| 공동노력<br>(Collective Action) | 윤리적 약속  |
|-----------------------------|---|
| 장기<br>이니셔티브                 | <b>원칙 기반 이니셔티브 (Initiative)로서의<br/>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b><br>일상 비즈니스 관행에서<br>기업들이 공동으로 반부패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http://www.unglobalcompact.kr>



UN Global Compact는 미국 뉴욕 UN에 본부를 두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도할 미래 리더 교육의 중요성,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투자, 자본시장에 있어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3천여 개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8천여 개 회원은 기업 회원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설립되어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40여개의 기업 및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관: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http://www.g-cef.org>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은 기업사회공헌, 기업사회혁신, 기업사회책임 분야 정책 연구 및 서비스 기관으로서, 2008년 11월 20일 설립 후, 2011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화 하였습니다. 연구, 교육, 세미나, 정책 분석 및 제안,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과 다자간 협력 제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CSR과 CSV, 지속가능성, 청렴성 증진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_관련 기관 소개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간 균형 있는 성장이 선순환 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산업융합 확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 추진,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입니다.

후원: 외교부  
[www.mofa.go.kr](http://www.mof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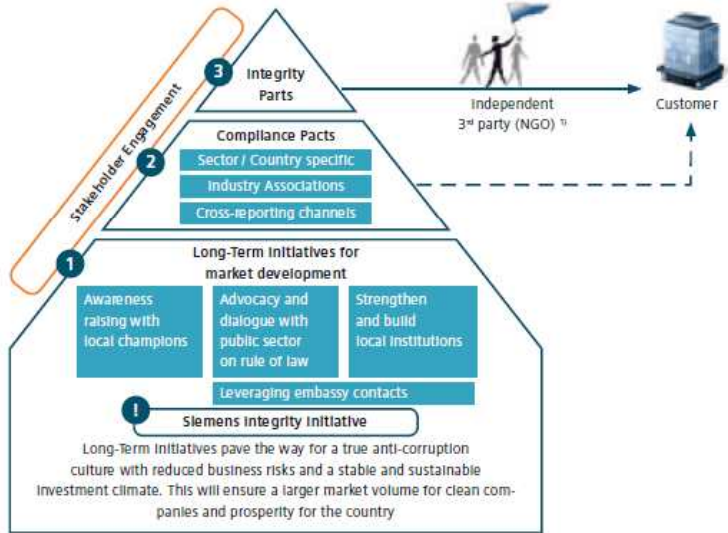


외교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설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교를 수립하고 재외공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리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을 단행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구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그리고 행정정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http://www.siemens.com/integrity-initiative>

- 독일 지멘스 본사가 전 세계 반부패를 증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화 100백만 달러 규모 글로벌 반부패 증진 프로젝트
- 2009년 세계은행, 2013년 유럽투자은행과 합의로
-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OECD, UNODC, UNDP, UN Global Compact 등과 같은 국제기관과 CII, VCCI, COCIR, POLMED 등과 같은 산업협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비영리 및 학계 기관들과 총 55개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과 교육 훈련(Education & Training) 사업 진행

출처: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Annual Report 2011. p15. & UN Global Compact. (2015) A Practical Guide for Collective Action against Corruption. New York. p.25 & p35-39.

■ 페어플레이어클럽 출범식 및 제1회 민관협력포럼 개최

- 일 시: 2015년 5월 19일
- 장 소: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튜디오 4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 국민권익위원회 박진영 부위원장, 지멘스 Sabine Zindera 부사장, UNGC Georg Kell 사무총장, 지멘스㈜ 김종갑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남인석 상근부회장, 해외건설협회 백영선 부회장, 한국철도협회 고창남 상임부회장 직무대행, 및 정부 관련 부처 및 산업협회 실무자



### ■ 페어플레이어클럽 산업별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 철도산업 (2015.06.11, 부산 BEXCO)
- 기계산업 (2015.10.30, 일산 KINTEX)
- 전자정보통신산업 (2015.11.05, 서울 GS비즈니스센터)
- 자동차산업 (2015.12.08, 서울 팔래스호텔)
- 해외건설산업 (2015.12.11, 서울 페럼타워)
- 의료기기산업 (2015.02.15, 서울 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사내변호사회 (2016.10.11,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 페어플레이어클럽 지역별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 서울광역시 (2016.07.14, 서울 프레스센터)
- 부산광역시와 부산상의 (2016.09.20, 부산상의)
- 광주광역시와 광주상의 (2016.09.22, 광주상의)
- 대구광역시와 대구상의 (2016.11.11, 대구 엑스코)
- 울산광역시와 울산상의 (2016.11.28, 울산상의)
- 대전광역시와 대전상의 (2016.11.30, 대전상의)
- 인천광역시와 인천상의 (2016.12.2, 인천상의)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_3차년도 활동

### 1차년도 (2015) 산업

반부패가 포함된 사회책임경영 기준 ISO26000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철도, 해외건설 등의 산업협회 및 한국사내변호사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 회원사들의 준법·윤리경영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2차년도 (2016) 지역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 증진을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3차년도 (2017)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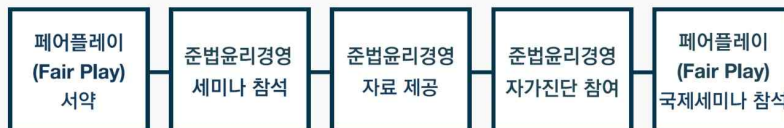
주요 7개국의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 간의 공동노력을 증진하여, 한국 기업환경에서의 반부패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을 높이고 주요 해외 진출국에서 한국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 가입 및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_개요 및 기대 효과

####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UN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Non-binding 하며 Cost-free인 페어플레이 (Fair Play) 반부패 서약은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대내외에 공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 페어플레이 (Fair Play) 반부패 서약 선포식 - 2차년도

- 일 시: 2017년 2월 24일
- 장 소: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참석자: 국무조정실 제1차장/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오균 단장,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지멘스㈜ 김종갑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  
국제상공회의소 (ICC) 기업책임&반부패위원회  
요한 르 프하페 부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 (TI) 본부 입테카르 자만 이사,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오규택 부시장,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  
인천광역시 정관희 감사관,  
및 125개 반부패 서약 기업 대표 등



### ■ 국내외 페어플레이어클럽 홍보 활동

- 국내 주요 언론에 FPC 활동 소개
- 제13차 UNGC 로컬 네트워크 연례 포럼 및 제16차 반부패 전문가 실무그룹 회의 (2015.06.23-25, 뉴욕 유엔본부)
- 해외 진출 기업 CSR 포럼 (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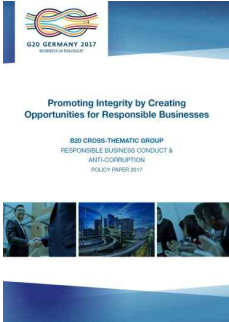


- 2016년 10월 20-21일 스위스 바젤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 국제 컨퍼런스
- 2016년 12월 8-9일 러시아 모스크바 정부 주최 제4회 반부패 국제 컨퍼런스
- 2017년 1월 26일 독일 베를린 제6차 G20-B20-C20 고위급 반부패 컨퍼런스
- 2017년 1월 27일 독일 베를린 B20 책임있는 기업관행과 반부패 컨퍼런스



### ■ 국내외 페어플레이어클럽 홍보 활동

- 독일 지멘스 최고준법경영책임자이자 OECD 기업자문위원회 BIAC 반부패 그룹 회장인 클라우스 무스마이어 박사가 회장을 맡은 2017 독일 B20 책임기업관행 & 반부패 TF 그룹 G20 대상 정책제안서의 공동노력 (Collective Action) 모범사례 중 하나로 소개됨



#### Exhibit 27 | Fair Player Club, Republic of Korea

The Fair Player Club is an anti-corruption initiative that aims to promote fair market conditions in Korea by creating a public- and private-sector platform for an anti-corruption ecosystem. The Fair Player Club pursues a spirit of fair-play in business conduct, requiring that all market players comply with the law. It promotes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foreign embassies, industry associations and chambers of commerce, awareness training and consensus building to promote anti-corruption through a Fair Play Pledge, aiming to obtain support from over 200 companies.

Source: The project forms part of the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by the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and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Siemens,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GCNK) in cooperation with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GCEF)*, accessed February 21, 2017, <http://www.siemens.com/about/sustainability/en/core-topics/compliance/collective-action/integrity-initiative/status-second-funding-round/global-compact-network-korea-gcnk.htm>.

###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Tel. 02-749-2149/2182 Fax. 02-749-2148 Email. [fpc@globalcompact.kr](mailto:fpc@globalcompact.kr)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CEF)

Tel. 02-714-5964 Fax. 02-713-5115 Email. [infogcef@gmail.com](mailto:infogcef@gmail.com)

[www.g-cef.org](http://www.g-cef.org)



Fair Player Club 홈페이지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